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11 발의연월일: 2022. 12. 8.

발 의 자:한정애·이동주·최강욱

장철민 · 강준현 · 김상희

강선우 • 이원욱 • 윤미향

민홍철 · 김영주 · 강훈식

강병원 · 윤영찬 · 서영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 조제4항).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중 "관계"를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무상보육) ① ~ ③ (생	제34조(무상보육)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4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	
위에서 <u>관계</u> 행정기관의 장과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